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3.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인증기관에**”를 “**관리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안전인증기관**”을 “**관리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인증기관에**”를 “**관리원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인증기관**”을 각각 “**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안전인증기관에**”를 “**관리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인증기관**”을 각각 “**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기관에**”를 “**관리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인증기관**”을 “**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기관은**”을 “**관리원의 장은**”으로,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을 “**해당**”으로, “**안전인증기관의**”를 “**관리원의**”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기관은”을 “관리원의 장은”으로,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을 “해당”으로, “안전인증기관의”를 “관리원의”
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기관은”을 “관리원의 장은”으로,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을 “해당”으로, “안전인증기관의”를 “관리원의”
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기본모델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신청모델	미보유() * 미보유 시 안전확인신고 필요		
KS인증 보유 여부	보유()	KS인증번호	*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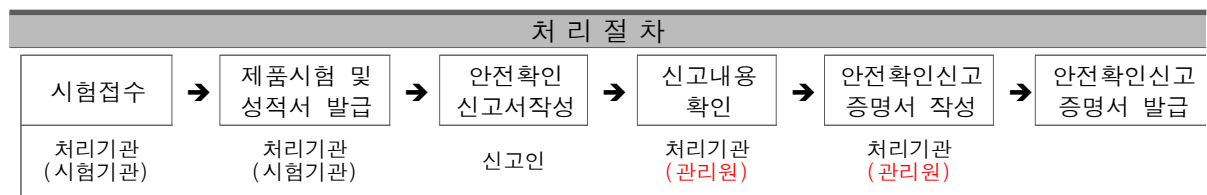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신고번호:
(Application No.)
신고회사명:
(Applicant)
주 소 :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Rating)
안전기준:
(Standard)

안전확인시험기관:
(Testing Labs)

본 확인신고는 제조국명:
제조업자명:
제조공장의 주소:
다수 공장의 명: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of the Safety Confirmation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1), 28(3), 29(2) or 34(2)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직인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안전확인신고 내용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안전 확인 신고 번호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또는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고내용	제품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부품변경[], 회사명변경[], 주소변경[], 그 밖의 변경[]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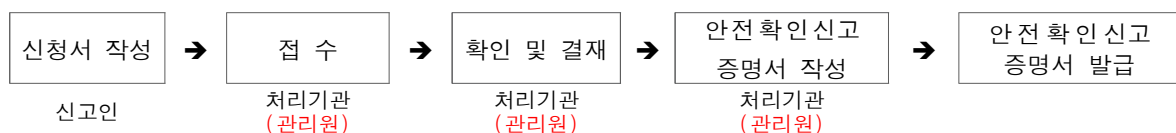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 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u>경우</u>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 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 ③ (생 략)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 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 확인시험) ① ----- ----- ----- <u>경우</u>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u> ----- ----- ---. <u>1. 제품설명서</u> <u>2.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u> <u>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u> <u>한정한다)</u> <u>3.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u> <u>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u> <u>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u> <u>정한다)</u> <u>4.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u> <u>안전확인의 표시 견본</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 ----- ----- -----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안전인증기관에</u>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 ----- <u>관리원의</u> <u>장에게</u> -----.
1.·2. (생략)	----- ----- -----.
3. <u>제품설명서</u>	1.·2. (현행과 같음)
4. <u>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한정한다)</u>	<u><삭 제></u>
5. <u>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u>	<u><삭 제></u>
6. (생략)	<u><삭 제></u>
7. <u>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u>	3. (현행 제6호와 같음)
8. <u>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u>	<u><삭 제></u>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u>안전인증기관이</u> 제27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u>관리원의 장</u> -----

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

② -----

----- 관리원의
장에게 -----.

③ -----
--- 관리원의 장-----

-----.

④ 관리원의 장-----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

-----.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

----- 관리원의 장에게 -----
-----.

② -----
----- 관리원의 장-----

-----.

③ 관리원의 장-----

다.

④ (생략)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생략)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

----- 관리원의 장에게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관리원의 장-----

-----.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원의 장은 -----

장, 시·도지사, 다른 안전인증 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생략)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생략)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

----- 해당 -----

----- 관리원의 -----

1. ~ 3. (현행과 같음)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원의 장은 -----

----- 해당 -----

----- 관리원의 -----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원의 장은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신고번호: (Application No.)
 신고회사명: (Applicant)
 주 소: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Rating)
 안전기준: (Standard)

본 확인신고는 제조국명: _____
 제조업자명: _____
 제조공장의 주소: _____
 다수 공장의 명: _____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of the Safety Confirmation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1), 28(3), 29(2) or 34(2)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전인증기관장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 항목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직인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하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료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안전확인신고 내용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mm×297mm(복합지(60g/㎡) 또는 종필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안전확인신고번호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또는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고내용	제품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			
변경내용	파생모델명록〔 〕,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 (필요시 별지 사용)			
제부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우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의함(우우표)

처 리 결 자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210mm×297mm(복합지(60g/㎡) 또는 종필지(80g/㎡))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신고번호: (Application No.)
 신고회사명: (Applicant)
 주 소: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Rating)
 안전기준: (Standard)

본 확인신고는 제조국명: _____
 제조업자명: _____
 제조공장의 주소: _____
 다수 공장의 명: _____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of the Safety Confirmation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1), 28(3), 29(2) or 34(2)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직인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하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료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안전확인신고 내용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mm×297mm(복합지(60g/㎡) 또는 종필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안전확인신고번호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또는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고내용	제품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			
변경내용	파생모델명록〔 1.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 (필요시 별지 사용)			
제부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우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의함(우우표)

처 리 결 자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210mm×297mm(복합지(60g/㎡) 또는 종필지(80g/㎡))

